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 수립을 위해 「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」를 제정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목적 규정(안 제1조)
○ “청년” 및 “청년정책” 등 조례상 용어 정의(안 제2조)
○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○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～제10조)
○ 청년의 참여확대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～제1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시행령 제5조의4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○ 규제심사 : 대상 아님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○ 입법예고 : 2019. 4. 5 ~ 4. 25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기존 일회성 청년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종합적이고,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모색을 위해 청년위원회 및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조례의 정의에서 “청년” 나이를 만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여, 타 자치단체의 34세, 39세 이하 등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으나, 인구감소 및 노령화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※ 19~45세 성주군 인구 : 10,584(전체 23.8%) [2019.4월 기준]

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